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서울특별시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
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년 1월 11일

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임용예정분야 직급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근무예정서부	근무기간	임용인원	임용대상 직무내용
교통분야	일반임기제 8급	교통행정과	임용일로부터 2년	1명	【교통관련 분야업무】 - 보행환경개선 사업 - 보행환경개선지구 교통시설물 관리 - 도심핵심축 자전거도로망 구축 - 교통체계개선,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교통관련업무 - 기타 교통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

2.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 자격

(기준일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)

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※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나.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구분	자격요건
교통분야 (일반임기제 8급 상당)	1.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(교통분야)

4.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기간 : 임용일로부터 2년
※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
- 근무장소 : 교통행정과
- 근무시간 : 주40시간, 1일 8시간 근무(월~금)
- 보수수준 :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【연봉한계액의 범위】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8급(상당)	55,877천원	39,859천원

※ 연봉외 급여는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및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(사업)목표, 추진전략, 추진일정 등을 기술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- ▶ (서류전형 기준) 자기소개서, 직무이해도, 직무수행계획,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, 업무실적, 근무경력 등 평가

나. 2차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- ▶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▶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다.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, 신원조사,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시험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3. 1. 11.(수) ~ 2023. 1. 25.(수)	2023. 1. 26.(목) ~ 1. 30.(월)	2023. 1. 31.(화)예정	2023.2월초(예정)	2023. 2월중(예정)

※ 합격자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(www.gwangjin.go.kr)「채용공고」란에 게시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3. 1. 26.(목) ~ 2023. 1. 30.(월) 09:00 ~ 18:00 [4일간]

※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

나. 접 수 처 :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증진팀 (민원복지동 2층)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 또는 우편접수(우체국 익일특급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▶ 주소 : (우05026)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,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교통행정과

▶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▶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수입증지(5천원) : 광진구청 민원여권과(민원복지동 1층)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.
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8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① 응시원서(첨부1 서식) 1부

- 원서교부 : 광진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in.go.kr>) 광진소개 / '고시공고'란 에서 다운로드(내려받기)
- 사진 1장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cm×4cm)
- 응시수수료: 광진구 수입증지(5,000원)-구청 민원여권과(민원복지동 1층 3번청구)에서 판매

② 이력서(첨부2 서식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
③ 자기소개서(첨부3 서식) 1부

④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 서식) 1부

-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·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, 정책(사업)목표, 추진전략, 수단, 방법,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

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5 서식) 1부

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(원본)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학과(학위)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제출 (첨부 6 서식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- 근무부서, 재직기간, 직책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

○ 외국어,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

-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입사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사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○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
○ 관련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(성과물) 각 1부

-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<자유서식>
-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

○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
○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(첨부 8호 서식)

- 취득한 학위(학과)가 응시자격의 지원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9.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및 응시업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.
 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
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
 -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.
 -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합니다.
-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합격자 등록기간(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)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.
-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(☎ 02-450-7912)